

미국등수입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(업체명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 소	전화번호

수입 물품의 명세

HS번호	품명	규격	단위 및 수량	단가
금액	① 용도	② 원산지	선적항	도착항
③ 수입기한				
④ 주거래 외국환은행				

「양곡관리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국 등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미국 등 수입허가 신청안내

제출하는 곳

농림축산식품부

처리기관
(담당부서)농림축산식품부
(식량정책과)

근거법령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2조(미국 등의 수입허가 등)
- ①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(이하 "양허세율"이라 한다)로 미국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·가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(이하 "허가대상미곡등"이라 한다)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「양곡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(수입의 허가)
-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국등수입허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.)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유의사항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등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국 등을 시가(時價)로 환산한 가액(價額)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併科)하게 됩니다.(「양곡관리법」 제31조제1항제1호)

작성방법

1. ① 용도는 MMA 입찰 샘플용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2. ② 원산지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원산지명을 적습니다.
3. ③ 수입기한은 연, 월까지 적습니다.
4.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환은행을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신청인

→

접수

처리기관
(농림축산식품부)

→

검토

처리기관
(농림축산식품부)

→

결재

처리기관
(농림축산식품부)

→

허가증 발급